나. 지자체별 조례 및 운영사항

지차제별로는 녹색도시, 생태도시, 문화도시 등에 관한 시행 및 기본 조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지정되었다.

녹색도시는 부산광역시, 청주시, 포항시, 강릉시 등에서 녹색도시의 개념을 정립하고 운영 및 조례 등을 필요 사항에 따라 규정하였다. 녹색도시란 기후변화 및 인간에 의한 자연과 지역공동체 파괴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사회·환경부문을 자연에 담긴 순환, 공생, 균형의 원리에 맞게 전환하여 현재와 미래 시민이 쾌적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도시로 정의하였다. 녹색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회복, 지역공동체의 발전, 쾌적한 생태학적 건강도시 환경조성과 시민의 건강증진 등 삶의 질과 공간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녹색생활문화 정착, 지역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립 등 도시공동체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생태도시는 전주시, 과천시, 담양군 등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조례를 규정하였다. 도시를 하나의 유기적 복합체로 보아 도시의 다양한 활동과 공간구조가 자연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 자립성, 순환성, 안전성의 원칙에 가깝도록 계획하도록 하였으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로 생태도시 비전, 분야별목표, 실천지표 계획, 종합계획의 평가를 제시하였다.

문화도시는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등에서는 문화도시를 주민이일상의 삶 속에서 문화적 정체감을 느낄 수 있는 도시로 정의하였고, 또한 자연환경에 친화적인 생태적 도시문화의 진흥을 제시하였다 (www.elis.go.kr).

환경부에서는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설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 자체에서 생태탐방로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